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5. 12. 30 조례 제 904호
일부개정 2009. 04. 24 조례 제1042호
일부개정 2009. 11. 13 조례 제1070호
일부개정 2011. 02. 23 조례 제1141호
일부개정 2011. 04. 15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4. 11. 10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15. 10. 01 조례 제1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9. 11. 13>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 2015. 10. 0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재단으로 설립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 보금
3.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금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5.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금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개정 2009. 11. 13>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1. 13>

-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1>

제7조(임원 및 임면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4. 11. 10>

-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개정 2014. 11. 10>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⑤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본조개정 2009. 11. 13, 2011. 04. 15><삭제 2014. 11. 1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04. 15>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2. 01>

1. 구청장

2. 자치행정국장

3. 문화환경국장

4. 대표이사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본조개정 2011. 04. 15>

제10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조개정 2009. 11. 13>

-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5. 10. 01>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신설 2015. 10. 01>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24, 2015. 10. 01>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1>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구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24.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2. 23 조례 제 1141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11. 04. 15.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01.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